

## 2018학년도 제5차 협성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9년 2월 11일(월) 오전 11시
2. 장 소 : 본관3층 제1회의실
3. 참석자
  - 의장 : 황인태
  - 의원 : 이학수, 윤용택, 박덕화, 윤경용, 이경호, 이미혜, 이제호, 정기영, 엄재혁  
(이상 10명)
  - 참관 : 이충범, 정현석, 이선진
4. 불참자
  - 의원 : 김주열 (이상 1명)
5. 심의안건 및 결과

호안	안건내용	심의결과
1	전차회의록 상정	원안가결
2	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3	2019회계연도 본예산(안)	원안가결

### 6. 회의내용

황인태 의장 : 대학평의원회 총 11명중 10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함. 제1호 안건 전차회의록을 상정함

황인태 의장 : 다른 의견이 없는지 묻고, 제1호 안건 전차회의록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요청함

이학수 의원 : 동의함

윤경용 의원 : 재청함

황인태 의장 : 전체 의원에게 의견을 물어 가하시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

전 체 : 예

황인태 의장 : 아니시면 “아니요” 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태 의장 : 제1호 전차회의록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함

황인태 의장 : 제2호 안건 규정 개정(안)을 상정함. 기획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함

간서명			
-----	---	---	---

이충범 처장 : [회의자료 참고] 협성대학교 학칙 개정(안)은 입학홍보과, 교무과, 학적교직과에서 요청하였음. 입학홍보과에서는 신학과 신입생 지원률이 하락함에 따라, 신입생 총원 시 선발대상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다수의 학생들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11조 입학 자격에 세례교인 조항을 삭제하고자함. 교무과에서는 원격수업 개설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는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제22조 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원격수업 교과목 구성 지침을 제시하였음. 이 지침에 의거 원격수업에 의한 교과목 개설 학점 수는 총 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제25조의2 원격수업개설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학적교직과에서는 제12조 재입학 자격을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41조의2를 신설하여 제적과 퇴학을 구분하고자 함. 제45조의2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제23조의5가 신설됨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유예' 정식용어가 사용되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황인태 의장 : 제2호 안건에 대한 질문을 요청함

박덕화 의원 : 제12조의 재입학 관련 규정도 교육부의 권고사항인지 질문함

이충범 처장 : 우리대학 자체적으로 재입학 관련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개정임

윤경용 의원 : 제45조의2 학사학위 취득유예는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재학 연한을 질문함

이충범 처장 : 본교 재학연한은 8년임

윤경용 의원 : 편입생의 재학 연한을 질문함

이충범 처장 :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는 본교에서 수업할 연한의 2배임

이학수 의원 : 제11조 입학자격에 기독교인 세례증명서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함

이경호 의원 : 담임목사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이충범 처장 : 신학생들이 실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을 진학해야 하며, 세례증명서가 없더라도 입학 면접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앙을 체크 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이학수 의원 : 교회 전도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고 7년이 지나야 하므로, 목회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은 학교에 입학하여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함

이충범 처장 : 세례증명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신학대학 교수들과 여러번 회의를 거쳤음

황인태 의장 : 다른 의견이 없는지 묻고, 제2호 안건 규정 개정(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요청함

이학수 의원 : 동의함

윤경용 의원 : 재청함

황인태 의장 : 전체 의원에게 의견을 물어 가하시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

전 체 : 예

간서명			
-----	---	--	---

황인태 의장 : 아니시면 “아니요”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태 의장 : 제2호 규정 개정(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함

황인태 의장 : 제3호 안건 2019회계연도 본예산(안)을 상정함. 기획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함

이충범 처장 : [회의자료 참고] 2019회계연도 본예산 자금 수입 및 지출 50,643,201,000원으로 운영하고자 함. 우리대학은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으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27억8백만원을 교육부 일반재정으로 지원받을 예정임. 이번 본예산 편성으로 교육비환원율이 약 150%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정책 수행을 위해 교육비환원율 상향 조정이 필요함

박덕화 의원 :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차이를 질문함

정현석 과장 :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는 사립학교 회계규칙에 의거하여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등록금회계는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으로 운영되는 회계이며, 비등록금회계는 등록금 수입을 제외한 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으로 운영되는 회계임

박덕화 의원 :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를 합한 금액이 교비회계인지 질문함

정현석 과장 : 등록금회계 약 326억과 비등록금회계 약 180억을 더하여 교비회계 약 506억이 됨을 답함

윤용택 의원 : 교외장학금이 줄어들었는데, 교내장학금도 줄었는지 질문함

정현석 과장 : 교내장학금도 전체 학생 수에 맞추어 줄었으나, 1인당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액은 변동이 없음을 답함

정기영 의원 : 직원보수가 작년 대비 증가한 사유를 질문함

이충범 처장 : 대학혁신지원사업 인력으로 약 11명 직원을 채용할 예정임

정기영 의원 : 2019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이 반영된 것인지 질문함

정현석 과장 : 교직원 보수는 동결을 가정하여 예산을 편성했음을 답함

황인태 의장 : 다른 의견이 없는지 묻고, 제3호 안건 2019학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요청함

이경호 의원 : 동의함

윤용택 의원 : 재청함

황인태 의장 : 전체 의원에게 의견을 물어 가하시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전 체 : 예

황인태 의장 : 아니시면 “아니요”하시기 바랍니다.

이제호 의원 : 임금동결에 대해 반대함

정기영 의원 : 임금동결에 대해 반대함

황인태 의장 : 찬성 의견 8명, 반대 의견 2명으로 제3호 2019학년도 본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함

황인태 의장 : 이것으로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났음. 기타 의견이 없는지 물음.

이충범 처장 : 금일 오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2월 21일에 이사회가 개최될

간서명			
-----	---	---	---

예정임. 이사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변동되는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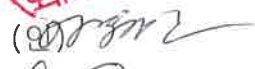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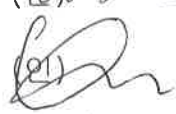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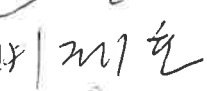

황인태 의장 : 법인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의견이 없는지 묻고 폐회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요청함

이경호 의원 : 동의함

이학수 의원 : 재청함

황인태 의장 : 폐회를 선언함

- 폐회 오전 11:50 -

의 장 :	황 인 태
의 원 :	이 학 수
	윤 용 택
	박 덕 화
	이 경 호 (인) 
	이 미 해 (인) 
	이 제 호 (인)   제이호 
	정 기 영 (인) 
	염 재 혁 (인) 